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5.10.20.>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제3조제2항제1호 관련)

경력 기준	채용예정 직위
1.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내외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박사학위 소지 후 1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16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2.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
1.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내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2.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경력	직무등급 9등급 직위
1.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2.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경력	직무등급 6등급~8등급 직위
1.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2.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경력	직무등급 5등급 직위
1.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근무 경력 2.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직원으로서 6년 이상 경력	직무등급 4등급 직위
1.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근	직무등급

무경력 2.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	3등급 직위
--	--------

비고: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의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 당시 예정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등급을 부여한다.